

#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6
----------	-----

제출일자 : 1997. 9. 25.

제출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고성군 보건소는 현재 입원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운영 계획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 개선하려함

## 2. 주요골자

입원병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종전에는 입원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예납토록 하는등 불필요한 조문을 존치해 오던 것을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13조)

## 3. 본문

###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고, 등조 제2항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별지제4호서식 또는 별지제5호서식"을 "별지제3호서식 또는 별지제 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7조(검사시험의뢰) ①보건소에 검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u>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u></p> <p>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u>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7조(검사시험의뢰) ①.....</p> <p style="text-align: right;">.....<u>별지 제1호 서식의</u>.....</p> <p>.....</p> <p style="text-align: right;">.....<u>별지 제1호서식</u>.....</p> <p>.....</p> <p>②.....</p> <p style="text-align: right;">.....<u>별지 제2호 서식의</u>.....</p> <p>.....</p> <p>.....</p> <p>.....</p>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검사, 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p> <p>.....</p> <p>...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13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 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원료외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 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p>	<p>(삭제)</p>